

부산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227105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2. 주식회사 B

3. C

4. D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15. 12.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7,414,842원 및 그 중 175,151,356원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B, C는 위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의 금원 가운데 77,575,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D 사이의 2014. 11. 14.자 매매예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4. 11. 14. 접수 제432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을 연 15%로 적용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은 소 취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전부 부담한다.

판사장민경

별지